

흩어져 있는 배움을 엮어 관리해주는

평생학습계좌제

| 교육기관용 |





제도 소개

→ 평생학습계좌제는 무엇인가요?

▶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·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

→ 즉, 개인이 온라인상에 개설하는 자신의 “e-포트폴리오”이며, 개인별 “평생학습 종합이력부”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※ 근거 법령 : 평생교육법 제23조

“평생학습계좌제” 좀 더 알아볼까요?

- 개인이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종자돈을 예치하여 두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 ‘재(財)테크’의 기본이듯이,
- 개인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이력을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하는 일종의 ‘학(學)테크’로 볼 수 있습니다.

→ 평생학습계좌제는 왜 필요한가요?

첫째

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

→ 개인이 학교 밖에서 참여한 다양한 학습 결과를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둘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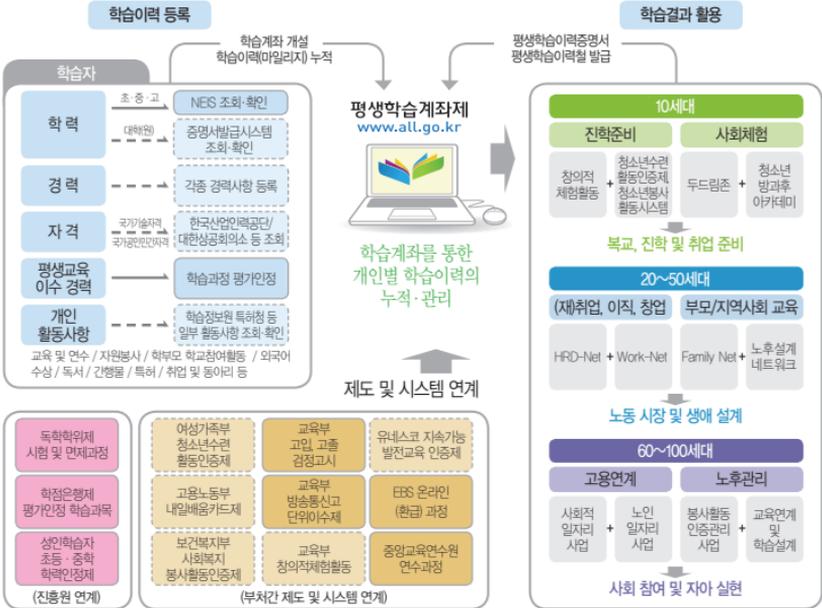
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

→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학습과정(평생교육프로그램)을 국가가 평가하고 관리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
→ 또한 전 생애 동안 자신이 참여한 평생학습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설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.

▶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계

| 학습이력관리시스템(학습계좌) |



▶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(평생교육프로그램)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

▶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학습이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?

학습결과의 누적 및 증빙자료 활용	e- 포트폴리오	나만의 학습이력을 온라인으로 누적, 관리하여 활용
	학습이력 증빙자료	진학,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, 활용
초등 학력 취득 연계	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* (초등학력인정제)	문자해득교육(초등과정) 학습과정 이수 시 초등학력 취득 기준의 2/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, 연계
	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* (중학학력인정제)	문자해득교육(중학과정) 학습과정 이수 시 중학학력 취득 기준의 2/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, 연계
중등 학력 취득 연계	검정고시** (시험과목 일부 면제)	성인 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관련과목에 대한 검정고시 시험 면제, 초졸, 중졸, 고졸 학력 연계
	방송통신고등학교*** 이수 단위 인정제 (고졸학력인정)	방송교 재학 중인 학습자가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졸업학점 활용 가능
	취업 및 인사 배치	학습계좌에 기록, 누적한 학습이력을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하여 취업 및 인사 자료로 활용
노동시장 진입자료 활용		

*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)

: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초등·중학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

** 검정고시 (고등학교 입학자격 제15조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12호)

: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자격에 필요한 지식, 학력, 기술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고시

*** 방송통신고등학교 (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 및 초·중등교육법 제51조)

: 방송통신(이러닝 기반)을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

▶ 평생학습계좌제는 어디에서 운영, 관리하나요?

- ▶ 주최 |  **교육부** (평생교육법 제23조제1항)
- ▶ 주관 |  **국가평생교육진흥원** (평생교육법 제19조제4항)



제도 이용 가이드

→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무엇인가요?

- ▶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(평생교육프로그램)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.

→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?

- ▶ 「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」 등에 따른 아래의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.

평생학습계좌제 신청가능기관

- 정부부처, 지자체, 교육청, 학교(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)
-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, 법인 또는 단체
- 「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,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, 법인 또는 단체

→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?

- ▶ 상·하반기 각각 1회씩, 연간 2회 실시합니다.

→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▶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학습과정(평생교육프로그램)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.

평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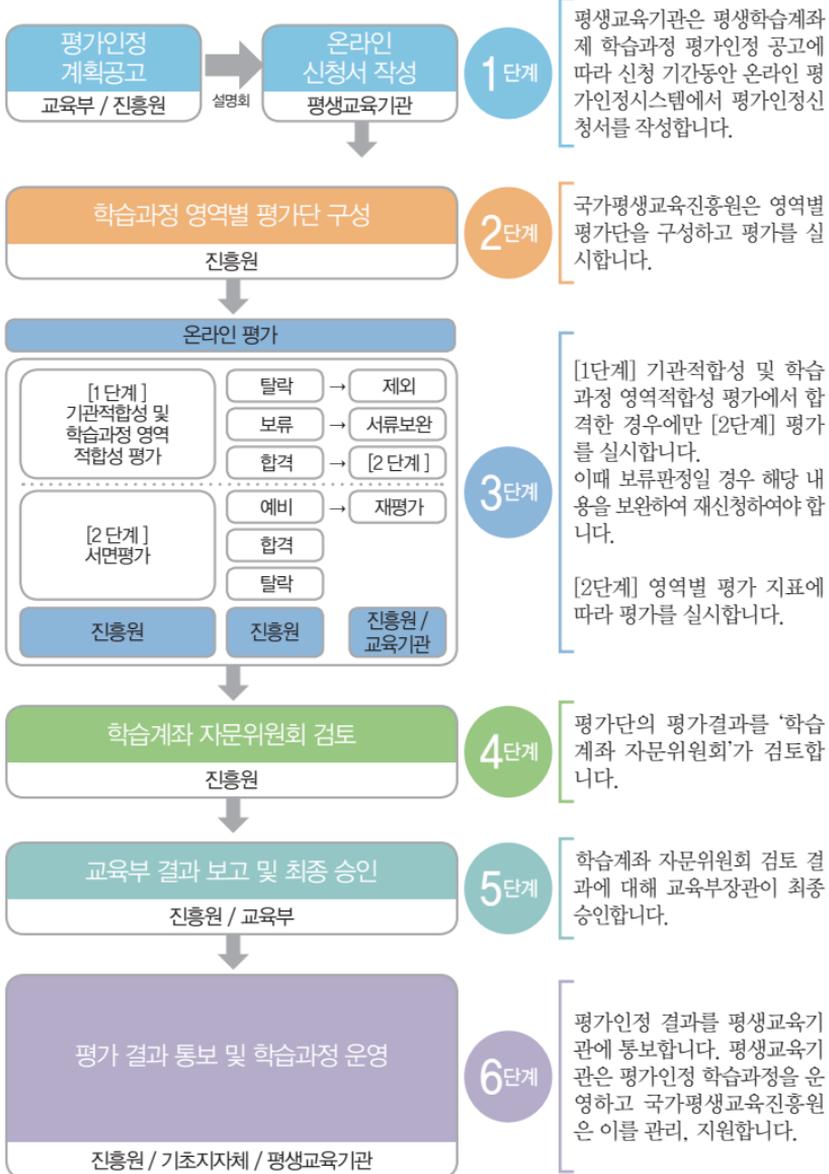
- 1) 교육시설 및 설비
- 2) 교수과정
- 3) 교원·강사
- 4) 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제
- 5)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적용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」

▶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▶ 평가인정 절차는 「계획 공고 → 신청서 접수(apply.all.go.kr) → 평가 → 심의 및 보고 → 결과 통보」의 순서로 진행합니다.



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언제까지 유효하나요?

- ▶ 평가인정 학습과정 유효기간: 평가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“5년”입니다.
- ▶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「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」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.

알아두세요!

◎ 학습이력 사실 확인

: 학습자가 요청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이수 사실 확인
→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

◎ 동일 학습과정 재개설 보고

: 재개설 학습과정 정보 등록
→ 개강 하루 전

◎ 평가인정 변경 보고/승인 신청 요청

: 평가인정 변경 사항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 및 승인 요청
→ 개설 4주전

◎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제출

: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종료 후, 운영 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
→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



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

▶ 지도·감독

→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.

▶ 시정 명령

→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에 시정 명령을 통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,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▶ 평가인정 취소

→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, 2)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, 3) 평가인정 받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, 4) 기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인정이 취소됩니다.

